한국체육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

제정 2011. 5. 26. (규칙 제555호)

-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7조에 의거 한국체육대학교 기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구성) ①위원회는 기획처장, 대학원장, 사회체육대학원장, 교학처장, 사무 국장, 훈련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 3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대학발전계획과 연차별 계획
 - 2. 중・장기 교육 및 연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
 - 3. 중·장기 시설계획 및 환경조성계획의 수립 조정
 - 4. 건물과 각종 시설물의 규모와 배치, 용도 및 공간 조정
 - 5. 대학평가에 관한 계획
 - 6. 학술교류협정 기본계획 수립
 - 7. 대학의 주요 홍보에 관한 계획
 - 8. 기타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
- 제 4 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5 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6 조(연구위원) ①위원회에 특정과제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 -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- 제 7 조(간사) ①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 - ②위원회 간사는 기획처 팀장이 된다.
- 제 8 조(수당과 여비)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(2011. 5. 26. 제555호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규정) 한국체육대학교 기획실운영규정(1984.12.31. 규칙 제46호)은 폐지한다.